

의안번호	제 2014 - 1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1. 20. (제5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 I. 제78차 전체 회의 .....
- 1. 일시·장소 .....
- 2. 참석자 .....
- 3. 주요 안건 .....
-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 5.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 II. 향후 일정 .....

<별첨자료>

최승원,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 VI”

최승원,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주용완, 조석영, “제78차 전문위원 회의 회의자료 - 약취·유인 양형  
기준 수정”

---



# I. 제78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4. 1. 6.(월) 16: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1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정, 범현, 조석영, 주용완, 최승원, 최준혁, 최진녕, 함석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검토
-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4.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 가.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의 제·개정

- 2013. 12.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으로 약칭함)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이 신설됨

#### - 아동학대치사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 아동학대중상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상습범 가중처벌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 2013. 12. 31.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는데,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처벌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제71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제17조 제3호 내지 제8호 해당 행위가 아래와 같이 수정됨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 .	제17조(금지행위) ----- ----- ----- <u>아니 된다</u>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u>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u>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u>
3. <u>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u>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u>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u>	<삭 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나. 양형기준 설정범위

- 학대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처벌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전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의견 일치

-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및 아동학대중상해(같은 법 제5조)는 기본범죄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상해, 폭행), 나목(유기, 학대), 다목(체포, 감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유기·학대 범죄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별도로 유형을 분류하도록 함
- 상습범(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같은 법 제7조)은 기본범죄에 정한 형에 1/2을 가중하게 되어 기본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별도의 형량범위가 권고되도록 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하목의 모든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등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아동학대범죄, 즉, 나목(유기, 학대), 다목(체포, 감금), 타목(아동복지법위반), 파목(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목(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내지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만 적용)의 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함

#### 다. 유형분류

-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조) 및 아동학대중상해(같은 법 제5조)는 아래와 같이 대유형분류 및 소유형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대유형분류
    -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는 기본범죄에 상해, 폭행(가목), 유기, 학대(나목), 체포, 감금(다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체포·감금’과 ‘유기·학대’ 중 어느 한 대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중상해’를 ‘체포·감금’, ‘유기·학대’와 별도의 독립된 대유형으로 설정하기로 함
  - 소유형분류

- 구성요건 별로 아래와 같이 소유형분류하기로 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 라. 권고 형량범위

- 아동학대중상해
  - 법정형(3년 이상)이 동일한 강간(13세 이상) 범죄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월-5년, 가중: 4년-7년]하기로 의견 일치
- 아동학대치사
  - 법정형(무기, 5년 이상)이 동일한 강간상해·치사(13세 이상) 범죄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하기로 의견 일치
- 소결론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아동학대중상해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아동학대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마. 양형인자

##### (1) 체포·감금

(가)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위 유형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 가중처벌) 및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가 적용되므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인자)로 각 규정하기로 의견 일치

(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위 유형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 가중처벌) 및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양형인자를 설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

(2) 유기·학대

- 체포·감금범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체포·감금범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양형인자를 설정하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양형인자를 설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견 일치

(3)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위 유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 가중처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만 적용되므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규정하기로 의견 일치
- 그 밖에는, ‘유기·학대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인자를 설정하기로 의견 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li> </ul>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체포·감금 및 유기·학대

- 기존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하기로 의견 일치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양형인자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규정하기로 의견 일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구 분	부정적	긍정적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진지한 노력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b>일반 참작 사유</b>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5. 약취·유인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가.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013. 4. 5.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약취·유인 범죄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됨 → 기존의 일부 구성요건이 삭제되고, 새로운 구성요건이 신설됨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약취·유인 범죄의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나. 논의 결과

### (1) 범죄군 명칭 변경

- 형법 개정 결과 형법 제31장의 장(章) 명칭이 기존의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 명칭을 '약취·유인 범죄'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로 변경하기로 의견 일치

### (2)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 (가) 대유형 명칭 변경

- 현행 대유형 명칭은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새롭게 신설된 모집·운송·전달이 위 대유형에 추가되어야 하므로, 대유형 명칭을 '약취·유인(매매·수수·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로 변경하기로 의견 일치

#### (나) 유형분류

- 5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기존에는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형법 및 특가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단순 약취·유인(법정형 : 10↓) 이외에 법정형이 거의 비슷한 단순 인신매매(법정형 : 7↓), 수수·은닉(법정형 : 7↓), 모집·운송·전달(법정형 : 7↓)도 위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함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개정 형법에 따른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법정형 : 1년 ~ 10년)와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법정형 : 2년 ~ 15년) 및 기존 양형기준의 제2유형(비난 목적의 약취·유인 등)에 포함되어 있던 재물취득 목적 약취·유인(법정형 : 무기, 5↑)은 법정형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각각 별도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약취자 등의 국외이송은 법정형(2년 ~ 15년)을 고려하여 제3유형에 포함시키도록 함

■ 제5유형(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기존의 제3유형(살해 목적 약취·유인)을 제5유형으로 함

■ 기존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등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단순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 제4유형(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 제5유형(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특가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다) 권고 형량범위

- 법률 개정이 없는 아래 제1, 4, 5유형은 현행 형량범위를 유지하고, 신설되었거나 법정형이 변경된 제2, 3유형은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8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4년6월
3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5	살해 목적 미성년자 약취·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라) 양형인자

-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신설된 구성요건인 모집·운송·전달도 수수·은닉과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단순 약취·유인에 비하여 다소 낮고 행위태양도 중범에 가까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약취·유인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약취자 등이 타인의 실력적 지배에서 자유로운 생활관계로 복귀하도록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큼
-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

- 특가법 등에 있었던 상습범 처벌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인자도 삭제되어야 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인자)로 각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규정된 인신매매·약취·유인범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가중처벌) 및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가 적용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3) 약취·유인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 (가) 유형분류

- 행위태양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① 피약취자 등 치상, ② 피약취자 등 상해, ③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으로 소유형분류를 하기로 의견 일치
- 현재는 대상범죄가 인질상해·치상(형법 제324조의3), 약취·유인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뿐이며, 소유형은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취·유인의 목적에 따라, ① 단순 약취·유인, ② 비난 목적 약취·유인, ③ 살해 목적 약취·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의 상해(형법 제290조 제1항) 및 치상(형법 제290조 제2항)의 죄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신설범죄들도 대상범죄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위 개정 형법은 약취·유인·매매 등의 목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약취·유인의 목적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행위태양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① 피약취자 등 치상, ② 피약취자 등 상해, ③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으로 소유형분류를 함이 타당
- 다만, 비난할 만한 목적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처벌을 차등화 하도록 함(현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난할 목적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기존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유인			
2	비난 목적 약취·유인			
3	살해 목적 약취·유인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2	피약취자 등 상해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범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 제2유형(피약취자 등 상해)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 제3유형(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치상)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 후 폭행·상해·감금·유기·가혹행위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인질상해·치상	형법 제324조의3

(나) 권고 형량범위

-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	1년6월 - 3년6월	3년 - 5년	4년 - 7년
3	피약취·유인 미성년자 상해 등 /인질상해·치상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다) 양형인자

-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 기본범죄(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는 그 목적 유무 및 그 목적의 내용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범죄에 비난할 만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적 양형요소로서 양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

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인자)로 각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 형법 제290조에 규정된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범죄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 가중처벌) 및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가 적용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4)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가)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 개정사항 없으므로 현행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나) 양형인자

-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행위인자)로,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를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인자)로 각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

-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특별법으로 약취·유인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4호 파목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상습범 가중처벌) 및 제7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가중처벌)가 적용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5) 약취·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유형분류

- 아래와 같이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신설된 ‘**피약취자 등 치사**’와 기존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의견 일치
- 현재는 대상범죄가 인질치사(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치사(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뿐이며, 위 두 범죄를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시켜 동일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음
-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의 살해(형법 제291조 제1항) 및 치사(형법 제291조 제2항)의 죄가 신설되었으므로, 위 신설범죄들 중 과실에 기한 치사는 대상범죄에 포함되어야 함(고의에 기한 살해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위 ‘**치사**’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기존의 인질치사(무기, 10↑) 및 특가법상 약취·유인치사(사형, 무기, 7↑)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의 소유형과 별도의 소유형을 창설하도록 함
- 기존 유형분류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 수정안에 따른 유형의 정의

- 제1유형(피약취자 등 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 제2유형(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나) 권고 형량범위

○ 신설된 아래 제1유형은 법정형이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조하여 형량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법률 개정이 없는 아래 제2유형은 현행 형량범위를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다) 양형인자

○ '자수'를 '자수 또는 내부고발'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약취·유인만 한 경우와 동일하게 내부고발을 자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포함함이 타당함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로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
- 매매·이송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위 인자에 매매·이송 부분을 추가하도록 함

(6) 집행유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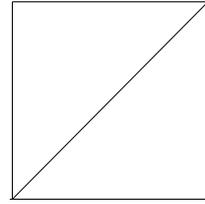
- 양형인자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수정 부분은 밑줄로 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li> <li>○ 반복적 범행</li> <li>○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li> <li>○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li> <li>○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 <u>·매매·이송인 경우</u></li> <li>○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li> <li>○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u>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li> <li>○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li> <li>○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 범행</li> <li>○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li> <li>○ 자수 <u>또는 내부고발</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범행 후 구호 호송</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	---

## II. 향후 일정

- 제79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 일정 미정



의안번호	제 2014 - 2 호
보 고 연 월 일	2014. 1. 10. (제5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1. 사건 접수 .....	1
2. 처리 현황 .....	13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30
III.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31
1. 양형위원 개임 .....	31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31
IV.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32
1. 개요 .....	32
2. 관련 규정 .....	32
3. 의견수렴 계획 .....	32
4. 시행 일정 .....	36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37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37

---

#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의 양형기준 시행 이후 2013. 10. 31.까지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09.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4	1	5
	강도살인	31	16	47
	강도살인미수	16	2	18
	살인	1,078	228	1,306
	살인교사	3	0	3
	살인미수	1,481	343	1,824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9	14	33
	존속살해	105	24	129
	존속살해미수	54	10	64
	특가법(보복살인등)	0	1	1
	전체	2,792	639	3,431
뇌물 범죄	뇌물공여	2,041	287	2,328
	뇌물공여교사	2	0	2
	뇌물공여약속	0	2	2
	뇌물공여의사표시	0	3	3
	뇌물수수	1,448	183	1,631
	뇌물약속	0	2	2
	뇌물요구	0	2	2
	부정처사후수뢰	76	6	82
	수뢰후부정처사	89	9	98
	제3자뇌물교부	106	13	119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제3자뇌물취득	113	15	128
	특가법(뇌물)	445	84	529
	전체	4,320	606	4,926
성 범 죄	강간	706	218	924
	강간살인	5	0	5
	강간상해	620	113	733
	강간치사	4	3	7
	강간치상	1,093	166	1,259
	강도강간	67	12	79
	강제추행	4,173	2,072	6,245
	강제추행상해	129	31	160
	강제추행치상	432	66	498
	미성년자의제강간	71	20	9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8	1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3	17	10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2	0	2
	상습강제추행	5	1	6
	상습준강제추행	2	1	3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657	53	710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11	0	11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62	7	169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92	8	200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75	11	186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1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67	24	39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9	17	136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7	24	181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7	0	17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42	7	49
	성폭력범죄(특수강간)	470	17	487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13	19	33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 ~	전체
		2012. 12.	2013. 10.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50	2	52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124	0	124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2	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99	71	87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15	216	431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5	4	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9	41	6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14	2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9	24	33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345	79	424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358	71	42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53	64	117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49	84	13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85	38	32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23	59	82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8	23	3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2	14	1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21	52	73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50	26	76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711	236	947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84	65	249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98	92	29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0	6	26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7	23	60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783	223	1,00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49	296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112	41	15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291	127	418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20	10	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608	344	2,952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3. 1. ~	전체
		2012. 12.	2013. 10.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0	9	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0	7	7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283	525	80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37	54	9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24	57	81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4	21	3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15	15	30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3	0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64	92	156
	유사강간	0	20	20
	유사강간상해	0	2	2
	유사강간치상	0	2	2
	준강간	363	155	518
	준강간상해	1	2	3
	준강간치상	47	17	64
	준강제추행	620	320	940
	준강제추행상해	2	1	3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3	5	18
	준유사강간	0	10	10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394	0	394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9,638	6,326	25,964
강도 범죄	강도	536	80	616
	강도교사	2	0	2
	강도살인	67	0	67
	강도상해	2,317	368	2,685
	강도상해교사	1	2	3
	강도치사	19	1	20
	강도치상	174	32	206
	준강도	293	43	336

범죄	세부죄명	2009.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준특수강도	46	10	56
	특가법(강도)	35	0	35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2	6	48
	특강법(특수강도)	2	0	2
	특수강도	1,914	362	2,276
	전체	5,448	904	6,352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1,802	268	2,070
	배임교사	0	1	1
	업무상배임	2,035	462	2,497
	업무상횡령	8,924	1,782	10,706
	특경가법(배임)	1,133	160	1,293
	특경가법(배임)교사	0	1	1
	특경가법(횡령)	1,529	256	1,785
	횡령	7,971	1,630	9,601
	전체	23,394	4,560	27,954
위증 범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0	5	5
	모해위증	69	11	80
	모해위증교사	1	1	2
	위증	4,390	819	5,209
	위증교사	582	131	713
	전체	5,042	967	6,009
무고 범죄	무고	6,502	1,110	7,612
	무고교사	10	15	25
	특가법(무고)	23	7	30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6,536	1,132	7,668
<b>총계</b>		<b>67,170</b>	<b>15,134</b>	<b>82,304</b>

나.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1.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2	0	2
	간음유인	1	1	2
	미성년자약취	23	10	33
	미성년자유인	18	8	26
	영리약취	2	3	5
	영리유인	3	10	13
	추행유인	3	1	4
	특가법(약취·유인)	21	1	22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53	5	58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0	1	1
	전체	126	40	166
사기 범죄	사기	51,209	30,878	82,087
	사기교사	0	3	3
	상습사기	214	113	327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26	11	37
	컴퓨터등사용사기	452	468	920
	특경가법(사기)	1,238	691	1,929
	전체	53,141	32,164	85,305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45	29	74
	산림보호법위반	69	52	12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342	151	493
	상습절도	2	1	3
	상습특수절도	2	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857	436	1,2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1	3
	야간방실침입절도	95	41	136
	야간선박침입절도	2	1	3
	야간주거침입절도	607	240	847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1	0	1
	절도	9,870	5,744	15,614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절도교사	20	27	47
	특가법(산림)	68	19	87
	특가법(절도)	3,158	1,861	5,019
	특수절도	5,098	2,990	8,088
	특수절도교사	2	17	19
	전체	20,240	11,610	31,850
공 문 서 범 죄	공문서변조	142	74	216
	공문서변조교사	1	1	2
	공문서부정행사	691	224	915
	공문서부정행사교사	5	4	9
	공문서위조	526	206	732
	공문서위조교사	0	3	3
	공전자기록등변작	0	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797	299	1,096
	공전자기록등위작	24	8	32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1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79	131	410
	변조공문서행사	12	4	16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4	22	5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1	7	28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2	0	2
	위조공문서행사	50	15	65
	자격모용공문서작성	1	0	1
	허위공문서작성	69	41	110
	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1	9
	전체	2,662	1,042	3,704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132	15	147
	사도화위조	0	2	2
	사문서변조	86	70	156
	사문서부정행사	8	1	9
	사문서위조	2,138	1,126	3,264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사문서위조교사	5	7	12
	사전자기록등변작	9	1	10
	사전자기록등위작	39	7	46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2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	1	3
	위조사문서행사	189	61	25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88	42	130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7	2	9
	허위작성진단서행사	5	1	6
	허위진단서작성	15	16	31
	허위진단서작성교사	1	1	2
	전체	2,724	1,355	4,079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8,588	3,099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물건무효		3	0	3
공용물건손상		960	334	1,294
공용물건은닉		2	3	5
공용서류무효		15	14	29
공용서류손상		87	30	117
공용서류은닉		5	4	9
위계공무집행방해		418	166	584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2	2
특수공무집행방해		485	235	7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71	104	375
특수공용물건손상		15	8	23
전체	10,853	3,999	14,852	
식품 ·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42	139	28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6	0	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784	582	1,36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4	4

범죄	세부죄명	2011.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0	23	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433	217	6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교사	0	1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4	15	19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3	0	3
	식품위생법위반	2,013	1,467	3,480
	식품위생법위반교사	3	0	3
	약사법위반	493	336	829
	의료법위반	1,220	590	1,810
	의료법위반교사	2	1	3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3	0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9	301	39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0	1	1
	화장품법위반	27	26	53
	전체	5,232	3,703	8,935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901	407	1,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65	38	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849	2,729	7,57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624	293	917
	특가법(마약)	1	0	1
	특가법(향정)	17	10	27
	전체	6,457	3,477	9,934
<b>총계</b>		<b>101,435</b>	<b>57,390</b>	<b>158,825</b>

다.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2.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71	293	36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0	31	31
	증권거래법위반	24	42	66
	특경가법(수재등)	11	31	42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특경가법(알선수재)	52	84	136
	특경가법(증재등)	13	23	36
	전체	171	504	675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12	23	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81	44	12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9	1	10
	상표법위반	471	731	1,202
	실용신안법위반	2	8	10
	저작권법위반	410	467	877
	특허법위반	10	14	24
	전체	995	1,288	2,283
폭력 범죄	상습폭행	1	2	3
	상해	8,219	13,211	21,430
	상해교사	1	2	3
	상해치사	57	73	130
	존속상해	58	84	142
	존속상해치사	1	9	10
	존속중상해	2	0	2
	존속폭행	14	25	39
	존속폭행치사	1	2	3
	존속폭행치상	2	1	3
	존속협박	9	0	9
	중상해	29	38	67
	특가법(보복범죄등)	0	37	37
	특가법(보복상해등)	1	27	28
	특가법(보복폭행등)	2	23	25
	특가법(보복협박등)	3	50	53
	특가법(운전자폭행등)	371	660	1,03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35	47	82
	특수폭행치사	1	0	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특수폭행치상	1	4	5
	특수협박	49	77	126
	폭처법(공동상해)	2,227	3,264	5,491
	폭처법(공동상해)교사	2	0	2
	폭처법(공동존속상해)	5	4	9
	폭처법(공동폭행)	480	774	1,254
	폭처법(공동폭행)교사	0	5	5
	폭처법(공동협박)	53	101	154
	폭처법(공동협박)교사	0	1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3	1	4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3	4	7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3	3	6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0	1
	폭처법(단체등의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1	1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16	9	25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2	6	8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5	4	9
	폭처법(상습상해)	38	92	130
	폭처법(상습존속상해)	0	6	6
	폭처법(상습존속폭행)	5	2	7
	폭처법(상습존속협박)	1	0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1	4	5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협박)	0	1	1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2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1	4	5
	폭처법(상습폭행)	30	65	95
	폭처법(상습협박)	9	7	16
	폭처법(야간·공동상해)	3	12	15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2,743	4,605	7,348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5	4	9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2. 12.	2013. 1. ~ 2013. 10.	전체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9	18	3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3	4	7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12	19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562	1,025	1,587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0	2	2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759	1,266	2,025
	폭행	2,928	5,591	8,519
	폭행치사	36	74	110
	폭행치상	98	178	276
	협박	438	753	1,191
	협박교사	1	1	2
	전체	19,345	32,278	51,623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775	8,608	14,383
	특가법(도주차량)	2,799	4,122	6,92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816	2,719	4,535
	전체	10,390	15,449	25,839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518	448	9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0	4	4
	전체	518	452	970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	436	436
	지방세기본법위반	-	3	3
	지방세법위반	-	3	3
	특가법(조세)	-	20	20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84	84
	전체	-	546	546
공갈 범죄	공갈	-	117	117
	특경가법(공갈)	-	1	1
	폭처법(공동공갈)	-	180	180
	폭처법(공동공갈)교사	-	2	2
	폭처법(상습공갈)	-	4	4
	폭처법(야간·공동공갈)	-	1	1

범죄	세부죄명	2012. 7. ~	2013. 1. ~	전체
		2012. 12.	2013. 10.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	5	5
	전체	-	310	310
방화 범죄	공용건조물방화	-	1	1
	일반건조물방화	-	13	13
	일반물건방화	-	17	17
	일반자동차방화	-	12	12
	현존건조물방화	-	6	6
	현주건조물방화	-	57	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3	3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8	8
	전체	-	117	117
	<b>총계</b>		<b>31,419</b>	<b>50,944</b>

※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접수건수임.

※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접수건수임.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2. 처리 현황

- 제1기 및 제2기,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로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되어 2013. 10. 31.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범죄군별 처리건수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09. 7. 1. ~ 2013.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09. 7. ~ 2012. 12.	살인범죄	수	2,494	1	0	2,495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범죄	수	1,871	1,210	48	3,129	
		비율	59.8%	38.7%	1.5%	100.0%	
	성범죄	수	11,895	1,828	1,238	14,961	
		비율	79.5%	12.2%	8.3%	100.0%	
	강도범죄	수	4,651	12	0	4,663	
		비율	99.7%	0.3%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2,910	13,010	3,514	19,434	
		비율	15.0%	66.9%	18.1%	100.0%	
	위증범죄	수	91	3,490	754	4,335	
		비율	2.1%	80.5%	17.4%	100.0%	
	무고범죄	수	181	3,868	1,154	5,203	
		비율	3.5%	74.3%	22.2%	100.0%	
	전체	수	24,093	23,419	6,708	54,220	
		비율	44.4%	43.2%	12.4%	100.0%	
	2013. 1. ~ 2013. 10.	살인범죄	수	547	1	0	548
			비율	99.8%	0.2%	0.0%	100.0%
뇌물범죄		수	330	188	26	544	
		비율	60.7%	34.6%	4.8%	100.0%	
성범죄		수	3,637	1,148	437	5,222	
		비율	69.6%	22.0%	8.4%	100.0%	
강도범죄		수	872	23	0	895	
		비율	97.4%	2.6%	0.0%	100.0%	
횡령·배임범죄		수	686	2,817	919	4,422	
		비율	15.5%	63.7%	20.8%	100.0%	
위증범죄		수	20	661	259	940	
		비율	2.1%	70.3%	27.6%	100.0%	
무고범죄		수	34	747	299	1,080	
		비율	3.1%	69.2%	27.7%	100.0%	
전체	수	6,126	5,585	1,940	13,65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44.9%	40.9%	14.2%	100.0%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1. 7. 1. ~ 2013.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1. 7. ~ 2012. 12.	약취·유인범죄	수	101	24	0	125
		비율	80.8%	19.2%	0.0%	100.0%
	사기범죄	수	2,165	26,349	9,394	37,908
		비율	5.7%	69.5%	24.8%	100.0%
	절도범죄	수	1,718	12,263	3,070	17,051
		비율	10.1%	71.9%	18.0%	100.0%
	공문서범죄	수	162	958	518	1,638
		비율	9.9%	58.5%	31.6%	100.0%
	사문서범죄	수	115	1,328	723	2,166
		비율	5.3%	61.3%	33.4%	100.0%
	공무집행방해범죄	수	524	4,000	3,491	8,015
		비율	6.5%	49.9%	43.6%	100.0%
	식품·보건범죄	수	71	842	2,858	3,771
		비율	1.9%	22.3%	75.8%	100.0%
	마약범죄	수	668	4,442	91	5,201
		비율	12.8%	85.4%	1.7%	100.0%
	전체	수	5,524	50,206	20,145	75,875
		비율	7.3%	66.2%	26.6%	100.0%
2013. 1. ~ 2013. 10.	약취·유인범죄	수	38	18	0	56
		비율	67.9%	32.1%	0.0%	100.0%
	사기범죄	수	1,877	21,087	5,926	28,890
		비율	6.5%	73.0%	20.5%	100.0%
	절도범죄	수	1,171	8,304	2,013	11,488
		비율	10.2%	72.3%	17.5%	100.0%
	공문서범죄	수	43	680	289	1,012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사문서범죄	비율	4.2%	67.2%	28.6%	100.0%
		수	67	963	469	1,499
	공무집행방해범죄	비율	4.5%	64.2%	31.3%	100.0%
		수	248	1,815	1,878	3,941
	식품·보건범죄	비율	6.3%	46.1%	47.7%	100.0%
		수	109	1,019	2,060	3,188
	마약범죄	비율	3.4%	32.0%	64.6%	100.0%
		수	564	2,826	53	3,443
	전체	비율	16.4%	82.1%	1.5%	100.0%
		수	4,117	36,712	12,688	53,517
		비율	7.7%	68.6%	23.7%	100.0%
		수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2. 7. 1. ~ 2013. 10. 31.)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2012. 7. ~ 2012. 12.	증권·금융범죄	수	13	18	10	41	
		비율	31.7%	43.9%	24.4%	100.0%	
	지식재산권범죄	수	1	219	328	548	
		비율	0.2%	40.0%	59.9%	100.0%	
	폭력범죄	수	558	4,935	5,738	11,231	
		비율	5.0%	43.9%	51.1%	100.0%	
	교통범죄	수	932	3,407	2,123	6,462	
		비율	14.4%	52.7%	32.9%	100.0%	
	선거범죄	수	278	18	0	296	
		비율	93.9%	6.1%	0.0%	100.0%	
	전체	수	1,782	8,597	8,199	18,578	
		비율	9.6%	46.3%	44.1%	100.0%	
	2013. 1. ~	증권·금융범죄	수	112	146	28	286
			비율	39.2%	51.0%	9.8%	100.0%
2013. 10.	지식재산권범죄	수	4	410	809	1,223	

처리기간	범죄군		사건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비율	0.3%	33.5%	66.1%	100.0%
	폭력범죄	수	1,349	13,556	14,686	29,591
		비율	4.6%	45.8%	49.6%	100.0%
	교통범죄	수	485	10,179	4,650	15,314
		비율	3.2%	66.5%	30.4%	100.0%
	선거범죄	수	556	19	0	575
		비율	96.7%	3.3%	0.0%	100.0%
	조세범죄	수	8	71	61	140
		비율	5.7%	50.7%	43.6%	100.0%
	공갈범죄	수	8	82	18	108
		비율	7.4%	75.9%	16.7%	100.0%
	방화범죄	수	42	3	0	45
		비율	93.3%	6.7%	0.0%	100.0%
	전체	수	2,564	24,466	20,252	47,282
		비율	5.4%	51.7%	42.8%	100.0%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나.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 (1) 제1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09.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살인 범죄	강간살인	2	2	4
	강도살인	20	11	31
	강도살인미수	19	1	20
	살인	971	204	1,175
	살인교사	0	3	3
	살인미수	1,327	289	1,616
	살인미수교사	2	0	2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0	1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13	5	18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미수	1	0	1
	존속살해	92	18	110
	존속살해미수	46	11	57
	특가법(보복범죄등)	0	2	2
	특가법(보복살인등)		1	1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단체등의살인)	2	0	2
	전체	2,495	548	3,043
뇌물 범죄	뇌물공여	1,475	249	1,724
	뇌물공여교사	2	1	3
	뇌물공여약속	0	0	0
	뇌물수수	980	168	1,148
	뇌물요구	0	1	1
	부정처사후수뢰	56	8	64
	수뢰후부정처사	67	17	84
	제3자뇌물교부	88	5	93
	제3자뇌물취득	94	9	103
	특가법(뇌물)	367	86	453
	전체	3,129	544	3,673
	성 범죄	강간	472	146
강간살인		3	0	3
강간상해		549	119	668
강간치사		3	4	7
강간치상		907	166	1,073
강도강간		53	13	66
강제추행		2,712	1,381	4,093
강제추행상해		134	30	164
강제추행치상		383	84	467
미성년자간음		0	4	4
미성년자의제강간		50	21	7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9	1	1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52	12	6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1	0	1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미성년자추행	0	1	1
	상습강제추행	2	1	3
	상습준강제추행	1	0	1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567	50	617
	성폭력범죄(13세미만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강간등살인)	8	0	8
	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	145	8	153
	성폭력범죄(강간등치사)	154	3	157
	성폭력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	0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55	10	165
	성폭력범죄(장애인위계등간음)	0	1	1
	성폭력범죄(절도강간등)	40	1	4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335	28	363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간)	112	7	119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1	9	140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5	0	15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9	2	31
	성폭력범죄(특수강간)	334	24	358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272	44	316
	성폭력범죄(특수강제추행)	35	4	39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76	0	76
	성폭력범죄(특수준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708	84	792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24	205	329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3	11	14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5	35	50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6	9	15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4	23	27
	성폭력범죄특례법(13세미만유사성행위)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살인)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상해)	285	65	350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사)	2	0	2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성폭력범죄특례법(강간등치상)	279	68	347
	성폭력범죄특례법(미성년자강간등)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간음)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간)	28	46	7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	31	53	8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53	33	286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13	65	78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계등추행)	4	17	2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위력등추행)	1	0	1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유사성행위)	4	10	14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0	29	29
	성폭력범죄특례법(장애인피보호자간음)	0	3	3
	성폭력범죄특례법(절도강간등)	44	17	61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616	218	834
	성폭력범죄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2	0	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139	51	190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55	97	252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21	10	31
	성폭력범죄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38	14	52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간)	546	197	74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도강간등)	247	50	297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강제추행)	88	35	123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간)	187	87	274
	성폭력범죄특례법(특수준강제추행)	9	17	26
	아동·청소년성보호법	4	0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233	399	2,632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상해)	0	1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치상)	0	4	4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	143	451	59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20	73	9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추행)	18	50	68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유사성행위)	10	17	27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간음)	7	25	3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추행)	1	2	3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	42	100	142
	아동·청소년성보호법(준강간등)교사	1	0	1
	유사강간	0	3	3
	준강간	214	125	339
	준강간상해	1	2	3
	준강간치상	40	17	57
	준강제추행	419	225	644
	준강제추행상해	2	0	2
	준강제추행치사	1	0	1
	준강제추행치상	14	1	15
	준유사강간	0	3	3
	청소년성보호법	1	0	1
	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4	0	4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86	0	186
	특가법(강도강간)	1	0	1
	전체	14,961	5,222	20,183
	강도 범죄	강도	475	86
강도교사		1	0	1
강도살인		63	0	63
강도상해		1,853	329	2,182
강도상해교사		1	1	2
강도치사		25	4	29
강도치상		150	32	182
준강도		283	42	325
준특수강도		43	7	50
특가법(강도)		40	2	42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38	10	48
특강법(특수강도)		1	0	1
특수강도		1,690	382	2,072
전체		4,663	895	5,558

범죄	세부죄명	2009.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횡령 · 배임 범죄	배임	1,479	274	1,753
	배임교사	0	2	2
	업무상배임	1,450	358	1,808
	업무상횡령	7,538	1,705	9,243
	특경가법(배임)	842	206	1,048
	특경가법(횡령)	1,332	303	1,635
	횡령	6,793	1,574	8,367
	전체	19,434	4,422	23,856
위증 범죄	모해위증	53	16	69
	모해위증교사	0	1	1
	위증	3,663	791	4,454
	위증교사	619	132	751
	전체	4,335	940	5,275
무고 범죄	무고	5,169	1,058	6,227
	무고교사	9	16	25
	특가법(무고)	24	6	30
	특가법(무고)교사	1	0	1
	전체	5,203	1,080	6,283
<b>총계</b>		<b>54,220</b>	<b>13,651</b>	<b>67,871</b>

(2) 제2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1.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약취 · 유인 범죄	간음약취	1	2	3
	간음유인	0	5	5
	미성년자약취	18	10	28
	미성년자유인	13	13	26
	영리약취	2	1	3
	영리유인	2	2	4
	추행유인	0	3	3
	특가법(약취·유인)	17	5	22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	72	14	86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특가법(영리약취·유인등)교사	0	1	1
	전체	125	56	181
사기 범죄	사기	36,291	27,472	63,763
	사기교사	2	1	3
	상습사기	174	109	283
	상습컴퓨터등사용사기	2	0	2
	준사기	22	11	33
	컴퓨터등사용사기	470	512	982
	특경가법(사기)	947	785	1,732
	전체	37,908	28,890	66,798
	절도 범죄	문화재보호법위반	23	26
산림보호법위반		45	45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9	155	364
상습절도		7	0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642	474	1,1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2	0	2
야간방실침입절도		75	53	128
야간선박침입절도		2	0	2
야간주거침입절도		522	303	825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		0	1	1
절도		7,963	5,079	13,042
절도교사		17	22	39
특가법(산림)		32	28	60
특가법(상습절도)		2	1	3
특가법(절도)		2,912	2,024	4,936
특수절도		4,594	3,271	7,865
특수절도교사		4	6	10
전체		17,051	11,488	28,539
공문 서 범죄		공도화변조	1	0
	공문서변조	88	89	177
	공문서변조교사	1	1	2
	공문서부정행사	330	169	499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공문서부정행사교사	2	3	5
	공문서위조	336	209	545
	공문서위조교사	1	3	4
	공용서류무효	0	0	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602	326	9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교사	1	0	1
	공전자기록등위작	15	9	24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0	1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70	134	304
	변조공문서행사	4	0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3	0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0	4	4
	위조공문서행사	28	12	40
	허위공문서작성	55	50	105
	허위공문서작성교사	0	1	1
	허위공문서행사	1	0	1
	허위작성공문서행사	0	1	1
	전체	1,638	1,012	2,650
	사 문 서 범 죄	변조사문서행사	9	6
사문서변조		107	86	193
사문서부정행사		5	0	5
사문서위조		1,875	1,273	3,148
사문서위조교사		4	6	10
사문서위조행사		1	0	1
사전자기기록등변작		5	2	7
사전자기기록등위변작		2	0	2
사전자기기록등위작		26	8	34
사전자기기록등위작교사		0	2	2
위작사전자기기록등행사		1	0	1
위조사문서행사		62	46	108
위조사서명행사		2	0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60	55	115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허위작성진단서행사	0	2	2
	허위진단서작성	7	13	20
	전체	2,166	1,499	3,665
공무 집행 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6,068	3,032	9,100
	공무집행방해교사	1	0	1
	공용건조물파괴	3	0	3
	공용건물손상	0	1	1
	공용물건무효	2	1	3
	공용물건손상	871	326	1,197
	공용물건손상교사	2	0	2
	공용물건은닉	1	3	4
	공용서류무효	10	13	23
	공용서류손상	77	23	100
	공용서류은닉	5	4	9
	공용전자기록등손상	1	0	1
	위계공무집행방해	322	151	473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0	2	2
	특수공무집행방해	407	219	62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0	0	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27	158	385
	특수공용건조물파괴	1	0	1
	특수공용물건손상	17	8	25
	전체	8,015	3,941	11,956
식품 보건 범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81	107	188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10	0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688	495	1,18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0	3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0	10	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306	227	5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	8	9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1	0	1
	식품위생법위반	1,433	1,313	2,746

범죄	세부죄명	2011.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식품위생법위반교사	0	3	3
	약사법위반	353	277	630
	의료법위반	793	568	1,361
	의료법위반교사	0	3	3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	0	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71	156	2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교사	0	1	1
	화장품법위반	30	17	47
	전체	3,771	3,188	6,959
마약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593	454	1,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54	25	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001	2,668	6,6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544	288	832
	특가법(마약)	1	1	2
	특가법(향정)	8	7	15
	전체	5,201	3,443	8,644
<b>총계</b>		<b>75,875</b>	<b>53,517</b>	<b>129,392</b>

(3) 제3기 양형기준 설정범죄(2012. 7. 1. ~ 2013. 10. 31.)

범죄	세부죄명	2012.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증권 · 금융 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3	147	160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0	7	7
	증권거래법위반	4	24	28
	특경가법(수재등)	3	21	24
	특경가법(알선수재)	18	65	83
	특경가법(증재등)	3	22	25
	전체	41	286	327
지식 재산 범죄	디자인보호법위반	6	13	1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3	23	26
	상표법위반	327	686	1,013

범죄	세부죄명	2012.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실용신안법위반	1	3	4
	저작권법위반	208	490	698
	특허법위반	3	8	11
	전체	548	1,223	1,771
폭력 범죄	상습폭행	0	1	1
	상습협박	0	1	1
	상해	4,640	11,705	16,345
	상해교사	0	1	1
	상해치사	26	75	101
	존속상해	37	95	132
	존속상해치사	0	10	10
	존속중상해	2	1	3
	존속폭행	4	28	32
	존속폭행치사	0	1	1
	존속폭행치상	1	2	3
	존속협박	4	3	7
	중상해	10	43	53
	집단·흥기등폭행	1	0	1
	특가법(보복범죄등)	50	93	143
	특가법(보복상해등)	0	18	18
	특가법(보복폭행등)	0	18	18
	특가법(보복협박등)	0	46	46
	특가법(운전자폭행등)	254	677	931
	특수존속협박	1	0	1
	특수폭행	17	63	80
	특수폭행치상	0	1	1
	특수협박	28	74	102
	폭처법(공동감금)	0	0	0
	폭처법(공동상해)	1,267	3,283	4,550
	폭처법(공동상해)교사	0	1	1
	폭처법(공동존속상해)	2	4	6

범죄	세부죄명	2012.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폭처법(공동폭행)	269	763	1,032
	폭처법(공동협박)	33	98	131
	폭처법(단체등구성·활동)	0	0	0
	폭처법(단체등의공동상해)	0	0	0
	폭처법(단체등의공동폭행)	0	1	1
	폭처법(단체등의공동협박)	1	1	2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상해)	2	24	2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폭행)	0	6	6
	폭처법(단체등의집단·흥기등협박)	3	5	8
	폭처법(상습상해)	31	73	104
	폭처법(상습존속상해)	0	1	1
	폭처법(상습존속폭행)	3	5	8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상해)	0	6	6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존속상해)	0	2	2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폭행)	0	3	3
	폭처법(상습집단·흥기등협박)	0	4	4
	폭처법(상습폭행)	30	42	72
	폭처법(상습협박)	7	10	17
	폭처법(야간·공동상해)	2	12	14
	폭처법(야간·공동협박)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	1,585	4,462	6,047
	폭처법(집단·흥기등상해)교사	2	2	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상해)	12	26	38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폭행)	5	9	14
	폭처법(집단·흥기등존속협박)	7	18	25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	355	959	1,314
	폭처법(집단·흥기등폭행)교사	0	1	1
	폭처법(집단·흥기등협박)	527	1,337	1,864
	폭처법(흥기등협박)	8	0	8
	폭행	1,694	4,539	6,233
	폭행교사	1	2	3

범죄	세부죄명	2012. 7.~ 2012. 12.	2013. 1.~ 2013. 10.	전체
	폭행치사	16	69	85
	폭행치상	47	188	235
	협박	247	678	925
	전체	11,231	29,591	40,822
교통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547	8,570	12,117
	특가법(도주차량)	1,672	4,061	5,733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1,243	2,683	3,926
	전체	6,462	15,314	21,776
선거 범죄	공직선거법위반	296	570	8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0	5	5
	전체	296	575	871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	138	138
	특가법(조세)	-	2	2
	전체	-	140	140
공갈 범죄	공갈	-	41	41
	폭처법(공동공갈)	-	64	64
	폭처법(집단·흥기등공갈)	-	3	3
	전체	-	108	108
방화 범죄	공용자동차방화	-	1	1
	일반건조물방화	-	6	6
	일반물건방화	-	8	8
	일반자동차방화	-	4	4
	현존건조물방화	-	4	4
	현존건조물방화치사	-	1	1
	현주건조물방화	-	19	1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1	1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1	1
	전체	-	45	45
<b>총계</b>		<b>18,578</b>	<b>47,282</b>	<b>65,860</b>

※ 1. 선거범죄는 2012. 9. 1. 이후 처리건수임.

2. 조세, 공갈, 방화범죄는 2013. 7. 1. 이후 처리건수임

## I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78차	2014. 1. 6.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안 검토</li> <li>○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li> </ul>

### Ⅲ. 양형위원 개임 및 위촉장 수여식 개최

#### 1. 양형위원 개임

- 2013. 12. 5.자로 임정혁 위원 사임서 제출
- 2013. 12. 24.자로 이건리 위원 해임(검사의 직에서 퇴직)
- 2014. 1. 16.자로 국민수 위원(서울고등검찰청장) 위촉
- 2014. 1. 16.자로 강경필 위원(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위촉

####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 시 : 2014. 1. 16.(월) 17:30
- 장 소 : 대법원 본관 11층 소접견실
- 참석범위 : 대법원장, 위원장, 상임위원, 비서실장
- 위촉대상자 : 국민수 서울고등검찰청장, 강경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신임 양형위원의 자세한 경력은 <별지>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기재 참조

## IV. 양형기준안 및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3. 의견수렴 계획

#### 가. 대상 기준안

- 제54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9차 공청회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

인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11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4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8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19	유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20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1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2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
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총무부장
30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31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32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33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	----	----	----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의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안 전 행 정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11		헌 법 재 관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3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4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5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6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8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9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연번	구분	기관	비고
20		대한법무사협회	사무총장
21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3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4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총무부장
28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9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30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31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4. 1. 24. ~ 2014. 2. 24.
- 의견조회 취합 : 2014. 2. 25.
- ※ 의견조회 결과는 위원회 제55차 회의 시 보고 예정

##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 접수 의견

연번	접수일자	의견요지
1	2013. 12. 9.	○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 개선
2	2013. 12. 12.	○ 즉결심판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3	2013. 12. 16.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4	2014. 1. 2.	○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

- 1,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
- 2,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사전에 설정·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개별 사건의 심리 및 결과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회신

[별지]

■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b>성 명</b>	<b>국 민 수 (鞠 敏 秀)</b>
	<b>생년월일</b>	1963년 1월 23일생
	<b>출 생 지</b>	충남 서산
	<b>소 속</b>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b>출신학교</b>	서울대학교
<b>주 요 경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li> <li>○ 1985. - 1987. 사법연수원 16기 수료</li> <li>○ 199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li> <li>○ 1994. 법무부 검찰2과 검사</li> <li>○ 1996.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li> <li>○ 1999.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li> <li>○ 200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li> <li>○ 2002. 대검찰청 공보담당관</li> <li>○ 20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부장</li> <li>○ 2005.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li> <li>○ 2006.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단장</li> <li>○ 2007.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li> <li>○ 200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li> <li>○ 2009.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부장</li> <li>○ 2009.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장</li> <li>○ 2010.07 ~ 2011.08 청주지방검찰청 지검장</li> <li>○ 2011.08 법무부 검찰국 국장</li> <li>○ 2013.04 ~ 2013.12 법무부 차관</li> <li>○ 2013.12 ~ [現]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li> </ul>		

## ■ 신임 양형위원 프로필

	<b>성 명</b>	<b>강 경 필 (姜 景 弼)</b>
	<b>생년월일</b>	1963년 9월 14일생
	<b>출 생 지</b>	제주
	<b>소 속</b>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b>출신학교</b>	서울대학교
<b>주 요 경 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li> <li>○ 1986. - 1988. 사법연수원 17기 수료</li> <li>○ 1991.03 - 1993.09 인천지방검찰청 검사</li> <li>○ 1993.09 - 1995.0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li> <li>○ 1995.03 - 1998.0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li> <li>○ 1998.08 - 2000.0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li> <li>○ 2000.03 - 2000.07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li> <li>○ 2000.07 - 2001.0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li> <li>○ 2001.06 - 2002.08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li> <li>○ 2002.08 - 2003.08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li> <li>○ 2003.08 - 2004.06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li> <li>○ 2004.06 - 2005.04 부산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li> <li>○ 2005.04 - 2006.0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li> <li>○ 2006.02 - 2007.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li> <li>○ 2007.03 - 2009.08 서울고등검찰청 검사</li> <li>○ 2009.08 - 2010.07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li> <li>○ 2010.07 - 2011.08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li> <li>○ 2011.08 - 2012.07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li> <li>○ 2012.07 - 2013.04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li> <li>○ 2013.04 - 2013.12.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li> <li>○ 2013.12 - [現]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li> </ul>		